약물검사를 포함한 학교 건강검사 실시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759

2025년 6월 20일 교 육 위 원 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5월 26일, 황철규 의원 외 23명

2. 회부일자 : 2025년 5월 29일

3. 상정일자 :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5년 6월 20일 상정, 원안가결)

Ⅱ. 주문

○ 청소년들의 마약류 남용 방지와 조기 발견을 통한 중독 치료를 위하여 학교 정기 건강검진 시 마약검사 항목을 포함하고, 검사 결과에 따른 상담·치료 연계 및 예방 교육 등의 후속조치를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학교보건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건의함

Ⅲ.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황철규 의원)

1. 제안이유

- 2023년 한 해 마약사범 적발 건수가 약 3만 건에 달할 것으로 전 망되며, 이 중 10대·20대 청년층이 1만 건을 넘어설 정도로 청소 년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와 약물 남용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 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실제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다크웹, 해외 직구 등을 통한 온라인 유통이 연령을 불문한 마약 확산의 주요 경로로 지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등학생이 6만 명분에 달하는 마약을 밀반입하다 적발되는 등 충격적인 사례도 발생하였음.
- 심지어 성인이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촉법소년 등 미성년자를 앞세워 범죄에 악용하는 '10대 마약 총책'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어 마약 문제가 청소년층에까지 깊숙이 파고들고 있음.
- 청소년기에 적절한 예방과 치료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평생에 걸친 중독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초기에 적극 개입하여 마약 위험을 차단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개인과 사회 전반에 장기적으로 누적될 우려가 큼.
- 하지만,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생 건강검진 항목에는 마약류 검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의 약물 남용 실태를 파악할 공식적인 수단이 없으므로 현행 법제도와 학교 현장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일부 학생이 마약에 손을 대더라도 학교 차원에서 조기 발견하기 어려우며, 우연히 적발되더라도 체계적인 후속조치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일관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마약으로부터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예방 교육을 넘어 실 제 검사를 통한 조기 발견과 개입이 가능한 적극적인 시스템 구축 과 제도 개선이 시급함.
-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마약검사를 시행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학생들에 게 강력한 예방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음. 학생들은 마약을 접하게 되는 순간, "학교에서 검사도 하는데 이걸 해도 되나?"라는 경각심을 한 번 더 갖게 될 것임. 이러한 제도적 조치는 단순한 적발 목적을 넘어, 청소년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유혹을 차단할 수 있는 '자기 통제력'을 기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마약 검사를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의 약물 남용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고, 발견 시 상담·치료 등 지원 조치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의 개 정을 촉구함.

Ⅳ.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건의안은 2025년 5월 26일 황철규 의원 외 23명의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759호로 제출되어 2025년 5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건의안은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사에 마약 검사를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의 약물 남용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여 상담· 치료 등 지원 조치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 개정을 촉 구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현행「학교보건법」(이하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 중 법 제7조(건강검사 등)¹)와 「학교건강검사규칙」제4조부터 제6조²)까지는 학생 건강검사별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표-1] 학생 건강검사별 내용 및 대상(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제6조)

구분	신체발달상황	건강조사	건강검진	별도검사	
내용	키, 몸무게	병력, 식생활 및 건강생활 행태, 정신건강 상태 검사 등 <문진표 조사>	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 병리검사 등	소변검사, 시력검사, 결핵검사	
대상	전학년	전학년	초 1 • 4, 중 • 고 1학년 *구강검진(초 전체) 포함	· 소변: 초 2·3·5·6학년, 중 · 고 2·3학년 · 시력: 초 2·3·5·6학년 · 결핵: 고 2·3학년	

[표-2] 학생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제2항 관련)

검진항목		검진방법(세부항목)		
1. 척추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 검사		
2. 눈	가. 시력측정	1) 공인시력표에 의한 검사 2) 오른쪽과 왼쪽의 눈을 각각 구별하여 검사 3)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한 경우에는 교정시력을 검사		
	나. 안질환	결막염, 눈썹찔림증, 사시 등 검사		

^{1)「}학교보건법」제7조(건강검사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할 때에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한다.

^{2)「}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방법)

제4조의2(건강조사의 항목 및 방법)

제4조의3(정신건강 상태 검사)

제5조(건강검진의 항목 및 방법)

제6조(별도의 검사)

3. 귀	가. 청력	1) 청력계 등에 의한 검사 2) 오른쪽과 왼쪽의 귀를 각각 구별하여 검사				
	나. 귓병	중이염, 바깥귀길염(외이도염) 등 검사				
4. 콧병		코곁굴염(부비동염), 비염 등 검사				
5. 목병		편도선비대・목부위림프절비대・갑상샘비대 등 검사				
6. 피부병		아토피성피부염, 전염성피부염 등 검사				
7. 구강	가. 치아상태	충치, 충치발생위험치아, 결손치아(영구치로 한정한다) 검사				
	나. 구강상태	치주질환(잇몸병)ㆍ구내염 및 연조직질환, 부정교합, 구강위생상태 등 검사				
	가. 소변	요컵 또는 시험관 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요를 채취하며, 시험지를 사용하여 측정(요단백·요잠혈 검사)				
8. 병리 검 사 등	나. 혈액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으로 채혈하여 다음의 검사 1) 혈당(식전에 측정한다),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HDL) 콜레스테롤, 중 성지방,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 및 간 세포 효소(AST·ALT) 2) 혈색소				
	다. 결핵	흉부 X-선 촬영 및 판독				
	라. 혈압	혈압계에 의한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9. 허리둘레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				
10. 그 밖의 사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검진항목 외에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 가하는 항목(검진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 이와 같이 현행 법령상 학생 대상 약물검사는 건강검사 항목에 포함 되어 있지 않으며,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대한 사항만 법 제9조 (학생의 보건관리)³⁾와 제9조의3(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⁴⁾

^{3)「}학교보건법」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 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⁴⁾ 본조신설 2025.3.18. (시행 2025.9.19.)

제9조의3(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대한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에 따라「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한다)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중독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학교안전교육

^{3.「}아동복지법」제31조에 따른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에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 따라서 학생 대상 약물검사를 건강검사 항목에 포함하여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교육청 및 학교에서는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예방교육을 통해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에 힘쓰고 있지만, 통계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문제는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도 지속적으로 보도5)되고 있습니다.

[표-3] 최근 5년간 연령별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이

연령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19세 이하	건수 (명)	239	313	450	481	1,477
19/11 0101	비율 (%)	1.5	1.7	2.8	2.6	5.3

[표-4] 2022년~현재 서울시 청소년 마약사범 발생 현황기

기간	합계(명)	미성년자(명)					
기단		14세 미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25년 1~4월	28	-	3	3	10	8	4
'24년	58	-	1	5	17	16	19
'23년	158	-	21	21	32	38	46
'22년	26	-	-	3	1	5	17

※ 미성년자(14세~18세) 마약류 사범 검거인원(기준일: 2025. 5. 1.)

③ 교육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에 학생의 마약류 중독、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마약중독예방교육에 대한 효과성 평가가 포함되도록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5) &}quot;친구가 마약 했다!"…중학생들, 대마 흡입 후 아파트 단지서 '환각 질주'(YTN, 2025.5.12.) 전자담배 피우듯 신종 마약…10대 '중독' 급증(한국경제, 2025.5.26.)

^{6) 2023} 마약류 범죄백서(대검찰청, 2024. 6월 발행)

^{7) &#}x27;시의원 요구자료 제출(1069번)'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8538, 2025.5.28.)

-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에서 예방과 치료 개입이 초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개인과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지만, 예방교육 위주의 현행 「학교보건법」 내에서는 학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따라서 동 건의안과 같이 학생 건강검사를 통한 약물검사의 근거가 마련된다면 청소년 약물 오남용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마약류에 대한 학생들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등 청소년 약물 오남용 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학부모가 미동의하는 사례와 학부모 동의없이 실시하는 경우 학생인권 침해, 낙인효과 등과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 최근 결과만 검출되는 소변검사의 한계, 청소년 마약 사범의 사법적 처리, 치료목적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학생 등 입법조치에 앞서 우려 되는 문제점 및 한계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서울시교육청 역시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개정 촉구 건 의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학생인권 침해 우려, 소변 검사의 검출 가능 기간에 따른 실효성 문제,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교육기관 으로서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 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6864, 2025. 6. 4.).
- 참고로 이러한 학생 약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22대 국회에서도 건강검사 정의에 '마약류 포함 약물 오남용 여부'를 추가하고 학교장은 약물검사 결과에 따라 상담, 치료 연계, 교육 등의조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8)이 발의되어 소

⁸⁾ 의안번호 220764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등 10인, 2025.1.20.)

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 이처럼 약물 오남용 문제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지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고 현재 국회에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바, 이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을 촉구하려는 취지의 건의 안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 Ⅵ. 토론요지 : 없음.
- ₩.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 ₩ .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 Ⅸ.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X.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약물검사를 포함한 학교 건강검사 실시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제도는 지난 30여 년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져왔으며, 그 중심에 교육과 보건복지의 강화를 통한 미래세대 보호가 있었다.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과 다크웹,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마약류에 손쉽게 접근하는 환경이 조 성되면서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이 마약을 복용하거나 유통에 연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조기 발견과 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생 건강검사의 항목에 마약류 관련 검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마약검사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상담이나 치료, 예방교육 등의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미비해 학생의 마약사용 사실이 발견되더라도 학교가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며, 결과적으로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건강검사에 마약검사 항목을 추가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필요한 상담, 치료 연계, 예방 교육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정기적인 마약 검사가 시행될 경우, 학생들은 실제로 마약을 접하는 순간 자연스

럽게 경각심을 갖게 되어 마약에 대한 접근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조치는 단순히 적발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이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유혹을 차단할 수 있는 '자기 통제력'을 기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교육기관은 단순히 학습의 장을 넘어,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다만, 마약검사 시행에 따른 학생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검사 전 학부모의 동의를 받고, 검사 결과는 비공개로 관리하며, 징계보다 교육과 치료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절차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행정기관은 검사 시행과 후속조치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검사 도구 및 장비 지원, 전문 상담 인력 확보, 치료기관 연계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학교 건강검사에 마약검사 항목을 포함하고, 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학교장이 취할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마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학교를 보다 안전한 교육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5년 5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일동